

‘시기상조’ vs ‘자율 선택’... ‘실내 마스크 해제’ 찬반 엇갈려

광주·전남 일일확진자 4천명대 지속...재유행 정점 향해 시의사회 격리조치 중단 촉구...착용 의무 조정 1-3월 예상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면서 지역사회에서도 찬반 논쟁이 화두로 떠올랐다. 질병관리청은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검토의 이유로 ‘약화된 병원성’과 ‘중증 방어력 향상’, ‘재유행 가능성 저하’ 등을 꼽고 있는 반면 지역별 코로나19 유행 현실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11일 광주·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연일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일 신규확진은 광주 1천894명, 전남 1천680명 등 3천574명이다. 지난 9일에는 광주 2천44명, 전남 1천963명 등 4천407명이 감염됐다. 8일에도 4천76명(광주 2천76명·전남 2천명), 7일엔 4천571명(광주 2천264명·전남 2천307명)이 감염되는 등 최근에도 3~4천명대 일일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이같이 코로나19 신규확진은 재유행의 정점을 향해 치달고 있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일고 있다.

회사원 최수연(32)씨는 “아직도 주변에서 지인들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조치를 받고 있다”면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을 경우 회사에 출근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 같다. 주변 지인들을 만나도 아직은 모두가 조심하자는 분위기인데 의무 해제는 이렇잖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한 자녀를 둔 김지선(29)씨는 “의무화 시설을 나눠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입장에서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의무화 시설 조정은 한쪽에선 방역을 열심히 지키고 다른 쪽에선 지키지 않는 이상한 모양새 같다. 코로나19로부터 걱정 없이 자유로울 수 있을 때 의무화를 완전 해제해야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방역수칙 이행이 잘 지켜질 것 같다”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해제를 환영하는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광주시내 변화가에서 자영업자를 하는 이진호(35)씨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의 아이러니한 부분은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서면 그 누구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허울뿐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해 자유롭게 원하는 사람만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광주의 한 선별진료소. /김애리 기자

안도윤(11)군은 “초등학생이 됐지만 자유롭게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운동도 하지 못했다. 친구들이 수업 하더라도 활짝 웃는 얼굴을 보고 싶다”고 소원했다.

광주시의사회도 지난 10일 실내 마스크 의무화와 확진자 격리 조치를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시의사회는 성명발표를 통해 “현재 코로나19의 정부 지침은 효용성이 낮아진 상황이고 지나친 규제도 실내 마스크 의무화와 확진자 격리조치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잃는다”면서 “의학적 근거에 입각한 과학방역으로 되돌아가 코로나19를 현행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에 맞게 4급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특히 어린 학생들의 건강권, 교육권에 심각한 침해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백부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행 시기는 향후 유행 상황 등 기준이 충족되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부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행 시기는 향후 유행 상황 등 기준이 충족되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형 상황 등에 대한 기준이 충족될 경우를 전제로 의무 조치 완화 스케줄을 설명한 것이다. 백 본부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한 방역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시설에는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백 부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행 시기는 향후 유행 상황 등 기준이 충족되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부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행 시기는 향후 유행 상황 등 기준이 충족되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말 전남서 화재 잇따라...어린이 1명 숨져

해남 주택·담양 창평시장·장흥 공장서 불...1명 사망·2명 부상

주말사이 전남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잇따랐다.

11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남 오후 1시20분께 해남군 송지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주인과 가스공급업체 직원 등 2명이 2도 화상을 입었다.

불은 집 내부를 태워 700여만원 재산 피해를 내고 오후 1시46분께 소방당국에 의해 완전히 진압됐다.

소방당국은 가스 누출 여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같은날 오일장이 선 담양의 전통시장에서 불이 나 장사를 준비하던 상인 수십여명이 급히 대피해야 했다.

오전 8시7분께 담양군 창평시장에서 원인미상의 불이 나 2시간3분 만에 진화됐다.

최초 화재를 목격한 상인 몇몇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길을 잡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시장 내 점포 48칸 가운데 10칸(150㎡)이 소실된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불길이 번지기 전 장사를 준비 중이던 상인들을 대피시켰다.

손님들도 많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어서 다행히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관

할 소방서 전 직원을 비상 소집했다.

소방관과 경찰 등 277명과 물탱크를 포함한 장비 35대를 동원해 30여분만에 큰불을 잡고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8시29분께 장흥군 장흥읍 한 공장 2층 숙소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숙소에서 휴를 잠을 자고 있던 6세 어린이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불은 숙소 내부를 태우고 25분만인 오후 8시54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현재까지 범칙 혐의를 의심할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인 등을 확인 할 예정이다. /오복기자

법원 “어등산 투자비 내년 6월까지 반환” 권고

광주도시공사 “반환조건 충족 안 됐다” 이의신청

광주 어등산 개발 사업 중단 과정에서 발생한 투자비 반환 소송에서 내년 6월까지 투자비를 사업자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조정안이 다시 제시됐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개발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광주도시공사는 투자비 22

9억여원을 내년 6월 30일까지 어등산리조트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도시공사는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 방침을 밝혔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2016년 조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투자비를 반환할 수 있다”며 “이의 신청을 통해 법원 판단을 다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어

등산리조트는 개발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2016년에도 광주시(도시공사)와 소송을 벌여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조정 내용 중 하나로 광주시는 어등산리조트가 이미 투자한 비용 229억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당시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투자비를 반환한다는 전제 조건이 달렸다.

어등산리조트는 투자비 반환이 지체되자 지난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며, 도시공사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당장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오복기자

잘못된 소송 바로잡다가 기한 놓쳐...대법 “소송 인정”

소송 종류를 잘못 선택했다가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기한(제소기간)을 넘겼더라도 문제 될 게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

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장을 운영하던 A씨는 ‘공장이주대

책’ 대상으로 선정됐다 2019년 LH에서 선정이 취소됐다고 통보받은 바람에 공장 매매계약이 취소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LH에 매매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일반 민사소송을 택했다. /연남뉴스

필로폰 투약 후 자수 40대 집행유예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경찰서에 출두해 자수한 4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해진)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

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에서 항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차례 구매 후 5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지난 4월11일께 필로폰을 자신에게 주사한 A씨는 광주 남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해 동부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15km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장은 “마약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투약 후 운전까지 하는 등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커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며 자수했고 치료를 다 받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오복기자

제사나라 www.jesanara.com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 안전기원제 고사
▶ 시 제 상
▶ 제 사 상
▶ 고 사 상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위폐